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2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박기열, 박순규, 안광석,
황규복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유대관계 형성 등의 순기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체육활동에 있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을 조례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제1호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1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7. ~ 15. (생 략)</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p> <p>7. ~ 15. (현행과 같음)</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p> <p>--.</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p> <p>2. ~ 7. (현행과 같음)</p>